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1248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유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만

변 론 종 결 2023. 4. 4.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1. 4. 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사업의 영업양수도계약을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5798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13. 'C는 소외 회사에게 1,154,670,944원 및 그 중 499,966,267원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12.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C는 2019. 6. 18.경부터 제천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소외 F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21. 7.경 F을 상대로 2021가소32722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C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타채60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전제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F이 원고에게 2021. 12. 31.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1. 4. 16. F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4. 16.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2021. 4.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G' 음식점 사업을 자신과 함께 음식점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별지 기재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C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1. 4. 1.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21. 4. 1. 당시 C는 이 사건 음식점 관련 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응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C와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피고가 2021. 4. 1.경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C가 2021. 4.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상당히 연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C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F를 상대로 추심금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F로부터 2021. 12. 31.까지 500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대하여 피고가 포괄적인 영업양수를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가사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음식점 관련 영업권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및 그 공동담보가액이 원고가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등을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희

별지

목 록

양도·양수된 사업

1. 상호

2. 주소

충북 제천시

3. 양도·양수된 사업의 범위

위 주소지에서 상호속용 및 시설·집기·인적구성 등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에서 로 이전하는 행위. 끝.

